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역시설 내 흡연행위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서일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62호)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95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I . 서일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62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95호)	2
1. 제안경위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4
1. 역시설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서일준의원안 제48조 및 제82조, 이훈기의원안 제47조 및 제82조)	4

I.서일준의원 대표발의(2218162)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일준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4. 7.
3. 회 부 일 : 2026. 4. 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안전법」은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의 과태료의 경우 금연지도원 등이 현장에서 흡연 행위를 단속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경우를 「철도안전법」에 따른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2조제4항제5호 신설)

Ⅱ. 이훈기의원 대표발의(2219295)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훈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6. 17.
3. 회 부 일 : 2026. 7.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열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흡연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흡연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철도경찰이 철도역사나 승강장에서 흡연 행위를 발견하더라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승강장은 다수의 철도 이용객이 밀집하는 공간으로, 흡연행위가 발생할 경우 간접흡연 피해가 즉시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법체계상 단속 권한이 분리되어 있어 신속한 현장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흡연 행위를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도 명확히 반영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철도경찰이 열차 안뿐만 아니라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철도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82조).

Ⅲ. 검토의견

1. 역시설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서일준의원안 제48조 및 제82조, 이훈기의원안 제47조 및 제82조)

개정안들은 철도역사, 승강장 등 역시설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서일준의원안	이훈기의원안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u>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1. ~ 3. (생략) 4. <u>흡연하는 행위</u> 5. ~ 7. (생략)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현행과 같음)	제47조(여객열차 및 철도역사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u>여객 등(여객, 무임승차자 및 철도역사 또는 철도승강장에 출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u> ----- ----- ----- 1. ~ 3. (현행과 같음) 4. <u>흡연하는 행위. 이 경우 철도역사 또는 철도승강장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u> 5. ~ 7. (현행과 같음)

현행	서일준의원안	이훈기의원안
②·③ (생략) ④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u>여객 열차에서의 금지행위</u>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략) <u><신설></u> 9. ~ 11. (생략) ② (생략) 제82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① ----- ----- ----- ----- ----- 1. ~ 8. (현행과 같음) <u>8의2.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u> 9.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여객 열차 및 철도역사 등에</u> <u>서의 금지행위</u>----- ----- -----.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현행과 같음) 제82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현행	서일준의원안	이훈기의원안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u>여객열차에서</u> 흡연을 한 사람 3. ~ 4. (생략) <u><신설></u> ⑤·⑥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5. 제48조제1항제8호의 <u>2를 위반하여 역시설에서</u> 흡연을 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현행과 같음) 2. ----- ----- <u>여객열차, 철도역사 또는 철도승강장에서</u> --- ----- 3. ~ 4.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 제47조에서는 여객열차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¹⁾.

한편 철도역사 및 승강장 등 역시설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 제48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²⁾에 따

1)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흡연하는 행위

제82조(과태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
2.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

라 금지하고 있으나 별도의 과태료 규정은 없으며, 이는 「국민건강증진법」³⁾에 따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는 시·도지사가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담당하고 있는데, 철도운영자가 관리하는 역사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신속하게 단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철도운영자는 역사 내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어 역사설 내 흡연행위 발견 시 계도 및 퇴거 조치⁴⁾만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2)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흡연이 금지된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4) 「철도안전법」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사람 및 그 위해물품

2.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송 금지 위험물을 운송위탁하거나 운송하는 자 및 그 위험물

3.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및 그 물건

4.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5.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 최근 5년간 역시설(승강장, 대합실 등) 흡연 현황 >

연도	장소별			
	계	대합실	승강장	기타
계	195	79	102	14
2021년	12	8	4	0
2022년	36	13	21	2
2023년	49	24	17	8
2024년	54	18	35	1
2025년	44	16	25	3

주. 기타는 역광장, 관할 외 등을 말함
자료 : 국토교통부

개정안들은 철도역사, 승강장 등 역시설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흡연 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하는 역시설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역시설은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하는 공간이고, 특히 도시철도의 경우 지하에 위치한 역사가 많아 흡연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연기 확산 및 이용객 대피 등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시설 내 흡연행위에 대하여 여객열차 내 흡연행위⁵⁾와 동일하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적절한 것으로 보임.

5)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흡연하는 행위

제82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

다만,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역시설 내 흡연행위를 규율하는 조문의 위치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역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두 개정안은 역시설 내 흡연행위를 규율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 서일준의원안은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규정한 제48조에 역시설에서의 흡연행위를 추가하는 반면, 이훈기의원안은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한 제47조의 적용범위를 철도역사 및 철도승강장까지 확대하고 있음.

현행법 제47조가 여객열차 내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48조는 철도시설 전반에서 누구든지 준수하여야 하는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 이미 역시설에서의 소란행위 및 노숙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시설에서의 흡연행위는 서일준의원안과 같이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임.

또한, 흡연금지 장소와 관련하여 서일준의원안은 ‘역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이훈기의원안은 ‘철도역사 또는 철도승강장’으로 흡연금지 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들은 흡연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국민에게 제재가 부과되는 장소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서일준의원안의 역시설의 범위를 구체화⁶⁾하여 보다 명확한 근거에 따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둘째, 도시철도 역시설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현행 체계상 도시철도의 여객열차 내 흡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다는 점⁷⁾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 역시설 내 흡연에 대해서도 시·도시사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제82조제6항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음.

6) 현행법 제48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에서 ‘역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명확한 범위나 정의는 부재함. 한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시설’의 정의에 역시설의 범위가 포함되어 있음.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7) 「철도안전법」

제82조(과태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 조 제1항제14호·제16호 및 제17호,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4항제2호·제3호 및 제5항제1호·제2호만 해당한다)가 부과·징수한다.

나. 국토교통부 의견

역 시설 흡연자는 흡연 중 열차 내로 이동, 열차 내 흡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며, 이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인 금지행위로 현재 퇴거조치에 그치는 ‘역 시설 흡연’을 ‘열차 내 흡연’ 수준의 과태료 부과 대상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함.

또한, 지자체 단속인력이 적어 단속의 실효성이 낮고 역시설은 일반 공공장소와 달리 ‘열차 내 수준’으로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82
